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2102 판결 [건물명도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9. 12.

판결 선고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4.98㎡ 및 2층 119.47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1. 30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권순향

별지